

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윤덕의원 대표발의) 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「경관법」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및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4조제7항 신설).
- 정비구역 내 건축·택지조성 등 행위의 제한구역 및 행위의 허용기준을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에 포함함(안 제17조제2항제13호 신설).
- 국가유산청장이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을 승인하도록 하면서 실시계획에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른 허가 등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승인 전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(안 제20조).

II. 검토의견

안 제20조제3항제3호는 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8조¹⁾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과 관련한 허

1) 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8조(현상변경 허가) ①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

가를 요하는 사항이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기 전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.

그런데, 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1조2)는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관하여 같은 법 제18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, 개정안에 이 준용규정이 적용되는지 명시하지 않아 법 적용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임.

이에 “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”는 문구를 명시하여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하여도 개정안의 적용을 받도록 국가유산청과 협의함.

현 행	개 정 안	수정의견
제20조(실시계획의 승인 등) ①·②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20조(실시계획의 승인 등) ①·② (생략) ③ 국가유산청장은 실시계획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이 경우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 <u>허가 또는 신고를 받거나</u> 한 것으로	제20조(실시계획의 승인 등) ①·② (생략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허가를 받거나 신고를</u> -----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- 제28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가등록문화유산
- 제31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은 국가등록문화유산
-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국가등록문화유산(근현대부동산유산에 한정한다)
- ② ~ ④ (생략)

- 2) 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)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, 제17조제1항, 제18조제1항·제3항, 제19조 및 제27조를 준용한다.

	본다. 1.·2. (생 략) 3. 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신고 또는 제18조에 따른 <u>허가</u> 를 요하는 사항	--. 1.·2. (생 략) 3. ----- ----- ----- <u>허가</u> (<u>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</u>)-----
③ (생 략)	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	④ (개정안과 같음)

그 밖에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전문위원 이 세 진)